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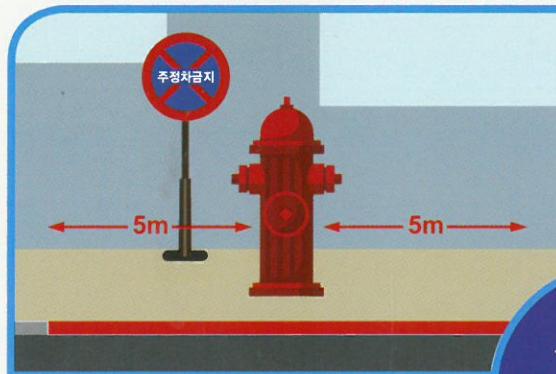
#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주세요!
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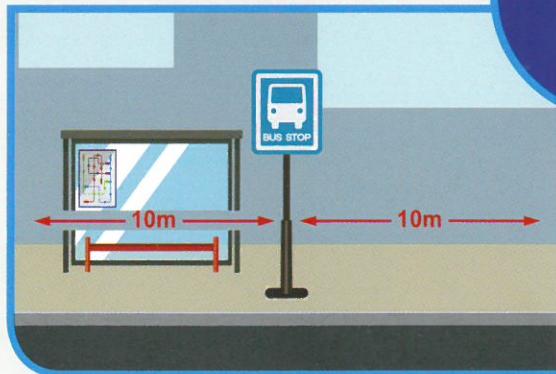


## 소화전

주·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
정지 상태 차량



## 신고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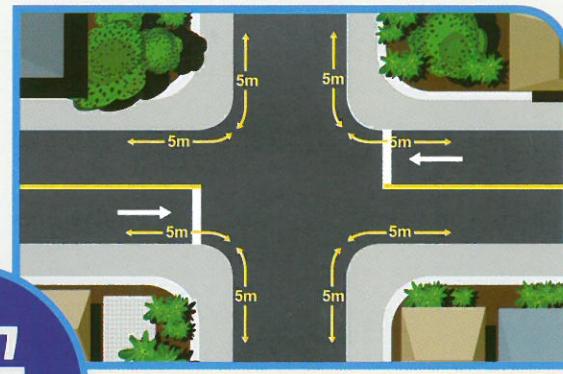


## 버스정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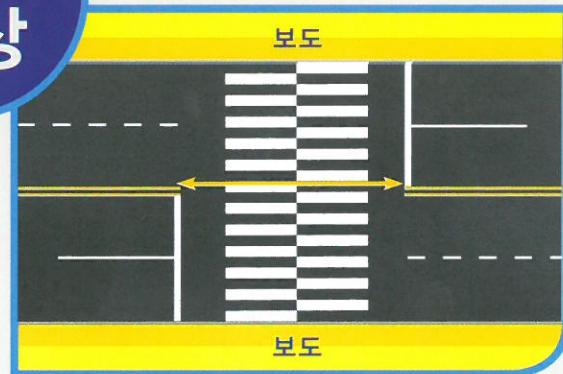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
정지 상태 차량

## 교차로 모퉁이

주·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 
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


## 보도



## 보도·횡단보도

보도·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
■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, 생활불편신고)

■ 신고(접수) 요건

▶ 사진자료 첨부

•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    •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
▶ 신고기한 :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

■ 과태료 부과 :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

행정안전부



부산광역시 남구

BUSAN METROPOLITAN CITY NAMGU